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확대〉

■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68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11. 3.
3. 회부일 : 2025.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대상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선순위자 1명,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와는 달리,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의 경우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하고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확대

□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생활수준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 법 제24조제1항제2호¹⁾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대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도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8조(대부)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1.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제18조(대부)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1)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3. 제26조에 따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아니하는 유족 중 <u>제5조제1항 제2호</u>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 ③ (생 략)	-----<u>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현행 보훈관계 법령²⁾은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대부지원은 그 종류를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로 구분하고,³⁾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대부 종류별로 3년에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있으며,⁴⁾ 대부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표 1] 보훈대상자 대부 제도 개요

구분	내용
목적	·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종류	· 농토구입대부 ·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 · 사업대부 · 생활안정대부
방식	· 위탁대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은행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이차보전 · 직접대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저신용자에 대해 보훈관서에서 대부 실시

자료: 국가보훈부

[표 2] 보훈대상자 대부 한도액 및 조건(2026년 기준)

구 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연이율 (%)	기 간	
주 택 대 부	아파트분양	3,000~ 6,000	2.5	20년균등	분양아파트(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 급여금·연대보증인)
	주택 구입 (신축)	3,000~ 6,000	2.5	20년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택 임차	2,000~ 4,500	2.5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주택 개량	800	3.5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자 영 사 업	농토 구입	3,000	2.5	3년거치 10년균등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	3.5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생 활 안 정		300~ 1,000	2.0	3년균등 (보철용차량 5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 보증인 등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대부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
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

**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 실시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51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9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 현행법은 동 제도의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①독립 유공자 본인(수권자), ②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수권자), ③선순위자가 아닌 독립유공자의 유족(비수권자) 중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자녀로 정하고 있음.⁶⁾

○ 이는,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 이라 함)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도 대부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만을 대부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령과 차이가 있음.

[표 2]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대부 대상자

구분	독립 유공자법	국가 유공자법	보훈보상 대상자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선순위자	선순위자	배우자	선순위자	선순위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 수급자	-	-	-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대부)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대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 고시)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지원 대상자는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워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대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라 하더라도 생활수준이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부 대상자로 추가되는 인원은 19,38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대부 대상자 및 대부 인원 현황

(25년 12월 기준 / 단위: 명)

구분	대부 대상자							비대상자		
	수권자							비수권자		
	보상금 수급자						보상금 미수급	생활지원금 수급자		기타*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의제 손자녀	며느리	손자녀	자녀	손자녀	
대상 인원	4	153	3,642	2,431	119	27	2,688	2,087	19,387	60,815
대부 인원	-	8	161	229	-	-	7	44	-	-

* 비수권 유족인 배우자와 비수권 유가족이면서 생활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녀 및 손자녀가 해당됨.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우의 기본이념⁷⁾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긍정할 수 있음.

□ 또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대부 제도의 목적 및 같은 취지에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제도의 대상자 등을 고려할 때, 생계곤란을 사유로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와 손자녀를 대부 대상에 있어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표 4] 생활수준 고려 생계지원 제도 대상자 및 대부 대상자 비교

구분	독립유공자법		국가 유공자법	보훈보상 대상자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
생계 지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본인+선순위유족	보상금 미수급 자녀·손자녀	본인+선순위유족			
대부 대상	상동	보상금 미수급 자녀 (손자녀 제외)	상동*			

* 보훈보상대상자법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와 달리 대부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한정됨.

** 생계지원금을 받는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대부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만, 이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원칙⁸⁾을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자녀에 비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영향이 덜 직접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자녀 간에는 그 예우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 상대적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의견⁹⁾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과 같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하여만 대부 대상자를 “손자녀 중 비수권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자녀 중 수권 유족”까지만을 대부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타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체계와의 형평성과 현재 대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보훈대상자도 대부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수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¹⁰⁾

○ 다만,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는 역사적 의의, 사회적 영향 및 후세대에 대한 교육 효과 등 측면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제도화될 무렵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자녀가 고령인 경우가 많았던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9) 개정안에 대한 舊 기획재정부 의견,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마319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331결정 등 참조.

10) 관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79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2025. 3. 4.)되어 있음.

현실적인 사정 등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의 특수성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¹¹⁾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필요성, 독립유공자 유족 간 형평성 제고 및 타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대부지원체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연평균 약 15억 8,000만원(5년간 약 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보훈기금 운용상 부담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¹²⁾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추계 (2027년~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부지원 손자녀 인원)	21,132	21,804	22,497	23,211	23,949	-
직접대부	1,355	1,398	1,443	1,489	1,536	7,221 (1,444)
위탁대부	128	132	136	140	145	681 (136)
합계	1,483	1,530	1,579	1,629	1,681	7,902 (1,580)

* 대부지원 손자녀 인원은 24년 인원(19,239명)에 최근 5년(2020~2024) 연평균 증가율 3.18% 적용

** 대부지원 지원율(직접대부 1.21%, 위탁대부 4.75%), 단가(직접대부 53백만원, 위탁대부 7.4백만원), 이차보전율(1.72%)은 최근 5년(2020~2024) 평균치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보훈부

11)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331 결정 참조

12) 2026년도 동 사업의 기금 계획액은 직접대부 226억 7,900만원(전년 동), 위탁대부(이차보전금) 107억 2,000만원(전년 대비 3억 3,200만원 증액)으로, 직접대부의 경우 2025년도 말 집행액 기준 약 6억 9,000만원이 불용(집행률 97%)되었으나, 위탁대부의 경우 계획액 대비 약 67억이 초과 집행되는 등 위탁대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계획액 대비 초과 집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고,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 舊 기획재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손자녀까지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2

